

KAIST클리ニック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빙 공고[재공고]

1 모집분야 및 인원

직종	직명	모집분야	모집구분	인원
전문의	초빙교수	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	신입/경력 무관	1명

※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2 모집분야 직무내용

모집분야	주요업무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트레스 클리닉 (정신건강의학과) 1차 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약 환자 진료 및 당일 진료 (주업무) · 학내 정신과적 문제 상황 대응 및 전문가적 개입 - 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사업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험군 조기 선별 및 개입 · 정신건강 홍보사업 등 - 기타 대학 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제반 업무

※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(별첨) 참고

3 지원자격

구분	주요내용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* 2023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
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-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
구분	주요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

4 근무조건 및 근무지

구분	주요내용
고용형태	초빙교수
근무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일제 (주5일, 9시~18시) * 진료시간: 월 ~ 금 오전 9AM ~ 1PM / 오후 2PM ~ 6PM
계약기간	임용일로부터 1년 * 최초 임용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가를 거쳐 재계약 가능
급여	본원 내규 (clinicinsa@kaist.ac.kr 로 주요경력, 연락처과 함께 문의요망)
근무지	한국과학기술원 본원 KAIST클리닉
근무부서	진료부
임용예정일	2023. 4. 3 (협의 후 조정가능)

5 지원방법 및 기간

구분	주요내용
지원방법	1. 임용지원서 (본교양식, 첨부자료 참고 요망) 2. Curriculum Vitae (자유양식) * 임용지원서는 작성 및 서명 후 스캔한 pdf파일과 hwp파일로 이메일로 제출 * 접수 이메일: clinicinsa@kaist.ac.kr (※ 지정양식 외 제출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불가합니다.)
접수기간	- 2023. 1. 27.(금) 9:00 ~ 2023. 2. 13(월) 23:59

6 채용일정

가. 채용전형 일정

구분	평가방식	합격배수	일정	비고
서류전형	임용지원서 기반 평가	5배수 (2배수)	추후 안내	KAIST 클리닉
면접전형	인터뷰	1배수 (2배수)	추후 안내	KAIST 클리닉
결격사유 검증*	채용후보자 대상 결격사유 확인	-		
임용	신규임용	-	2022. 4월 중	KAIST 클리닉

- *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 -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,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.
- ※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

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시기	제출방법
비전임직 교원 임용지원서, Curriculum Vitae	이메일 접수 시 제출	이메일 (clinicinsa@kaist.ac.kr)

나. 결격사유 검증

- 제출대상자: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
- 제출방법: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-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
-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, 컴퓨터 캡처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.

-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.
-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

가. 이의신청

구분	주요내용
신청기간	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
신청방법	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
처리대상	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(※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)

나. 채용서류 반환신청

구분	주요내용
청구기간	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
신청방법	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
반환대상	- 채용서류(기초심사자료, 입증자료, 심층심사자료 등)
반환제외대상	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-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

9 유의사항

-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,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,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함.

*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편견 유발 6대 항목: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교명, 성별, 생년월일(연령), 사진
- 2) 편견 유발 10대 항목: 결혼, 재산, 취미(특기), 종교, 신장(체중), 학력, 전공, 학점, 외국어, 추천인

* 예시: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, 학교기숙사 주소, 학교동아리명, 출신학교 유명인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. 누나, 오빠, 형, 아들, 딸(기혼),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.
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(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)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.
-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-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
5. 청탁·압력·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
6. 부정합격자*

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○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·채용취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○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*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
*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

○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KAIST 인사팀(recruit@kaist.ac.kr)